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학)가톨릭중앙의료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2-0212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대표자	민 창 기	
확인내용	명칭	마이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및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구역	전국	
	기간	1년 내외(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규모	서비스 이용자 500명 내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는 전송요구서가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법인에 맞게 변경 필요(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을 법인명, 사업자번호로 변경 필요)- 해당 정보 제공시마다 환자에게 별도 통보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송요구권 관련 세부 절차 마련 시,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외의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소노인터내셔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3-81-08341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1층	
	대표자	이 광 수, 이 병 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2025년 8월 7일 ~ 2027년 8월 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양평군, 고양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천안시, 강원도(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고성군), 전라남도(진도군, 여수시),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군), 경상북도 (경주시, 청송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기간	2025년 8월 7일 ~ 2027년 8월 6일	
	규모	소노호텔앤리조트 17개 지점 내 식음업장 59곳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사료관리법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4711-008949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1로 137, 상가2동 205-209호	
	대표자	박 지 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시흥시, 대전광역시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4개소(구역별 각 1개소)	
	조건	○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 로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37486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대표자	이용배	
확인내용	명칭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유효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5조, 제 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자목 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KGS AC418 2017(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7.2		
	구역		
	실증단계	세부주소	
	트램 모듈 제작	·(현대로템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트램 충전	·(대원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89번지 (덕정공원 일대)	
	완성차 시험	·(로만시스 칠서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1길 49	
	예비주행시험	·(철도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세종시 전동면 종합시험선로	
실주행시험	·(울상향선 유류선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장생포로 303 울산항역 일원, ·(현대로템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규모 수소전기트램 1기		
	조건		
	○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불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안전성 확보방안

-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既 판매된 것으로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수소용기)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제조등록 기준은 KGS AC417(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 안전기준)을, 제조·검사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4를 준용
 - 수소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안전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 필요
 - * 용기 재검사의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8 준용

□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절을 참고
- (안전성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트램용 연료전지 및 용기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안전과>

-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철도차량은 현제도에서도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동 실증사업 추진 가능
 - 다만, 수소연료전지·용기를 장착한 철도차량의 국내 검증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형식승인 면제 시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은 필요하므로,
 -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 ※ 현대로템(주)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확인서-58호, 2020.10.19.) 시 동일 조건 既 적용 (제작사 RAMS 활동 ⇒ 철도연 검토)
- 아울러,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①기술개발 → ②실증사업을 통해 기술기준(안) 마련 → ③기술기준 제·개정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 실증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기술심의 등을 거쳐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개정 적극 검토
-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연료전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소내압용기)에 따라 안전성 확인 후 실증특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창원산업진흥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31-82-00041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팔용동) 6층 18호	
	대표자	장금용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비스	
	주요내용	기체 수소충전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전환(3개소) 및 액화수소충전소 신규 구축(2개소)을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경상남도 창원지역 내	
	기간	2년	
	규모	기체 수소 충전소 전환방식(3개소), 액화수소 충전소 신규구축 방식(2개소)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 필요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의무 ※ 상세조건은 불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 (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범운영) 사업자는 1개소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충전소 운영 등 액화수소충전소 세부 실증조건 별첨 참조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 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1. 개요

- 규제특례 신청 액화수소충전소 5개소에 대하여 실증·운영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

* 유형1 : 기존 기체수소 충전소에 액화수소 공급설비 추가 방식

유형2 : 신규 액화수소 충전소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요약

구 분			창원산업진흥원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5개/24개월(9천대/개소)
② 충전설비 안전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③ 국산화 제품의 안전성 확인			대원충전소에 설치하는 액화수소 관련 국산화 제품은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영(세부계획 수립)
④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유형1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유형2	해외 전문 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하여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유형1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 이수,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유형2	해외 전문운영인력이 국내에 상주,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⑤ 주민수용성			미관 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3.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운영 등 실증조건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 (실증운영) 사업자는 5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실증운영하면서 9천대의 수소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9천대/개소)
-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② 충전설비 안전성

- (충전소 운영정보) 사업자는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 (충전소 입지) 실증운영 충전소는 입지조건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결정
- (안전장치) 압축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누출 위험 위치마다 경보기, 온압센서 등 검증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연결 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적용
 - * (예시) <경보기> 펌프, 저장탱크 방출구, 이충전 연결부,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등(세부안은 추후 공사에서 제시)
-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해 국내 충분한 재고 확보

③ 국산화 제품의 안전성 확인(대원충전소)

- (적용대상) 2022년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액화수소 충전소용 저장탱크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저장탱크 및 기화장치, 배관 등 액화수소 공급설비
- (시험방안)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시험방안 중 택일
 - ❶ 주변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부지(나대지)에 액화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시험조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후 기존 충전소(대원충전소)에 옮겨 설치하는 방안
 -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액화수소를 최초 충전 시 10% 이하로 충전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 확인

- 주요 안전성능 확인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상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검토 및 승인 후 시험 실시

* (저장탱크 내부 압력 및 온도 변화, 공급설비의 장치 및 배관 연결부에서의 수소 누출 여부, 운전 시 기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② 기존 충전소에 액화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시험조건(①의 시험조건 포함)에 따른 안전성 검증 완료 후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

- 시험 중에는 충전소 운영 중단 및 충전소 내 일반인 출입을 통제
- 액화수소 공급설비와 기존 충전소 사이에 차단밸브 설치
- (성능시험 검증) 시험 결과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④ 전문인력

- (시공·운영인력) 충전소 유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
 - 유형1 : 액화수소 충전소 선행 사업자로부터 충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대원충전소는 개발자도 상주)
 - 유형2 : 실증기간 동안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
-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 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⑤ 주민수용성

-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저장탱크의 높이에 따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 대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4711-008949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마은안1로 137, 상가2동 205-209호	
	대표자	박 지 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시흥시, 대전광역시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5개소(구역별 각 1개소)	
	조건	○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6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9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0-81-00900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대표자 김형관		
확인내용	명칭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주요내용 유연호스를 통해 탱크로리에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 (1단계) 이동형 매니폴드를 통해 탱크로리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으로 액화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 (2단계)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을 위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4], 동조 동항 제4호 [별표8]		
	구역 에이치디현대미포 사업장(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내 안벽(5개소)		
	기간 2년		
	규모 액화이산화탄소 1,000톤 *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1척, 유연 호스(2개 호스 연결), 호스 연결부, 이동형 매니폴드 1대, 약 탱크로리 50대 활용		
	조건 ☐ (관리체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준수 ☐ (타법준수) 해당 실증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안전성평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실증사업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적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자료제공 협조)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사업자가 부대조건에 제시한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방안 마련 후 실증특례 진행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이행을 전제로 액화이산화탄소를 선박에 이송하는 실증특례를 허용

< 부대조건 >

- **(고법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준수
- **(타법준수)** 해당 실증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등

- **(안전성평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실증사업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적용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준용

< 안전성평가로 도출하는 위험 요인 예시 (참고) >

- 액화이산화탄소 특성을 고려한 연결설비(가스배관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 연결설비를 활용하여 액화이산화탄소 이송작업 종료 후, 연결설비는 사업소 내 보관 장소로 이동, 실증 사업소 외로 이동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 이동식 매니폴드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
- 가스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이송용 호스 사이에는 세이프티 커플링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준용

- **(실증안전기준)** 고압가스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선박에 이송하는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도시가스사업법」별표 6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기준 등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검토 요청

- (자료제공 협조)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 사업자가 부대조건에 제시한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방안 마련 후 실증특례 진행 필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하이창원(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98-88-01519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8-1	
	대표자	손 상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설비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보관 및 운송설비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및 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창원 두산중공업 부지 內 플랜트 구축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대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311호	창원산업진흥원
2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전주)
3	실증-158호	범한메카텍

첨부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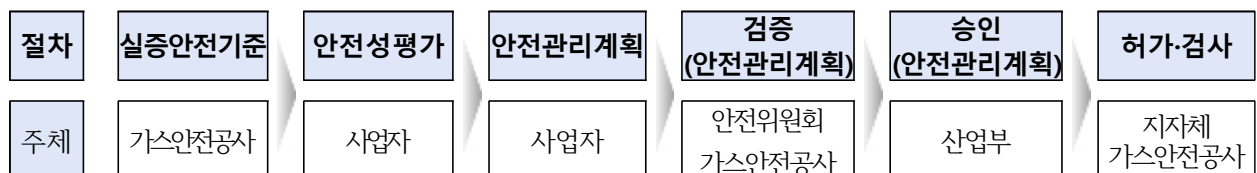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①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

- ❶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 ❷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 ❸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 ❹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②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③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 (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IGE(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4-87-01955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3	
	대표자	박 흥 락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p>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쏠단계 실증</p> <p>-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보급하여 운영</p>	
	유효기간	<p>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p> <p>*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p>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p>	
	구역	(플랜트) 인천 SK석유화학 부지,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40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0대, 충전소 40기	
	조건	<p>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별첨 2)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p> <p>2. 액화수소 충전소 40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p> <p>3.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p>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전주, 광양)
5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6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경산)
7	실증-307호	현대자동차(화성)
8	실증-406-1호	HD현대중공업(평택)
9	실증-406-2호	하이리움산업(평택)
10	실증-311호	창원산업진흥원(창원)
11	2024-강원-01 2024-강원-12	하이리움산업(삼척, 평창)
12	2024-강원-03	디에이치투에너지(삼척)
13	2024-강원-02 2024-강원-08	강원테크노파크(삼척, 평창)
14	2024-강원-09	제아이앤지(평창)
15	2024-강원-10	한국가스기술공사(평창)
16	2024-강원-11	현대로템(평창)
17	실증-158호	범한메카텍(창원)

별첨 2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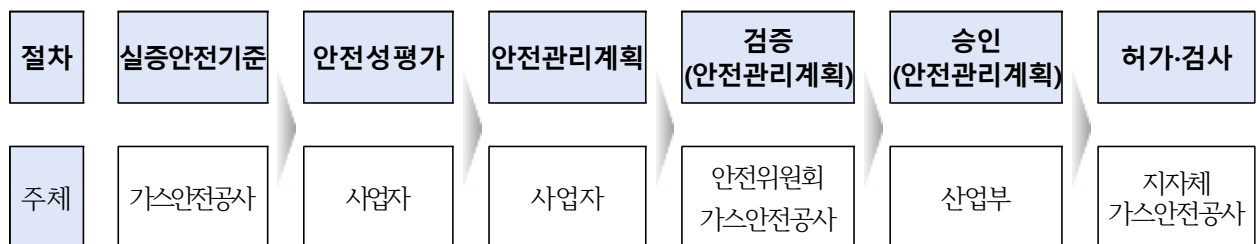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①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 ❶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 ❷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 ❸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 ❹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②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③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 (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④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 ①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 ②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 ③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2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7(청진동,타워8)	
	대표자	신 영 수, 민 영 학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용기 제조·검사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3] ② 액화수소 운반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9의2], 제50조에 따른 [별표30], 같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KGS GC207], 제13호에 따른 [KGS GC206]	
	구역	(수소출하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수소충전소) 전국 소재 37개 액화수소 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40대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첨부 2] 참조 ○ 액화수소는 [첨부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운송 가능(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5	실증-307호	현대자동차(화성)
6	실증-406-1호	HD현대중공업(평택)
7	실증-406-2호	하이리움산업(평택)
8	실증-311호	창원산업진흥원(창원)
9	2024-강원-01 2024-강원-12	하이리움산업(삼척, 평창)
10	2024-강원-03	디에이치투에너지(삼척)
11	2024-강원-02 2024-강원-08	강원테크노파크(삼척, 평창)
12	2024-강원-09	제아이앤지(평창)
13	2024-강원-10	한국가스기술공사(평창)
14	2024-강원-11	현대로템(평창)
15	실증-158호	범한메카텍(창원)

첨부 2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제품 분야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절차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운송 분야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절차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 (액화수소 운송) 액화수소의 안전한 운송 및 이송작업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전자 교육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및 준수

* ① 액화수소 운송 안전관리조직 구성 ② 액화수소 탱크로리 및 운전자 등 직접 운영·관리 ③ 액화수소 제조·충전사업자와 유기적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6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탱크로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0-81-10037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6길 24	
	대표자	김명기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울산, 창원, 인천)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충전소 및 산업용 그리고 실증·연구용 등에 공급, 플랜트 복귀하는 유통 전 과정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용기 제조·검사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 및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 10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213], [KGS AC113] ② 액화수소 운반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9의2], 제50조에 따른 [별표30], 같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KGS GC207], 제13호에 따른 [KGS GC206]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6대, 액화수소 충전소 21개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안전위원회는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적용○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행 실증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안전검사)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상세조건은 [별첨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1]의 액화수소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운송 가능(단, 산업부 및 기후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주)
2	실증-311호	창원산업진흥원
3	실증-427-1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4	실증-428호	린데코리아(주)

별첨2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안전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안전위원회는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적용
-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1 사업자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행 실증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주요내용)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 포함 (필요시 사업자 자체 안전기준 추가 가능)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 * (예) ① 액화수소 운송 안전관리조직 구성 ② 액화수소 탱크로리 및 운전자 등 직접 운영·관리 ③ 액화수소 제조·충전사업자와 유기적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
 -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계획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검사)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2 안전관리위원회

- (구성)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계획(안) 적정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실증 안전기준 개선(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너지안전과)로 보고·승인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7-1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린데 수소에너지(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8-86-16938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용연동)	
	대표자	금 교 석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p>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쏠단계 실증</p> <p>-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그리고 실증/연구용 등에 보급하여 운영</p>	
	유효기간	<p>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p> <p>*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p>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p>	
	구역	(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 호성화학 용연 공장 내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20대, 충전소 21기	
	조건	<p>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p> <p>2. 액화수소 충전소 21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p> <p>3.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의 액화수소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p>	
	공통조건	<p>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p>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주)
2	실증-427-1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	실증-311호	창원산업진흥원
4	실증-428호	린데코리아(주)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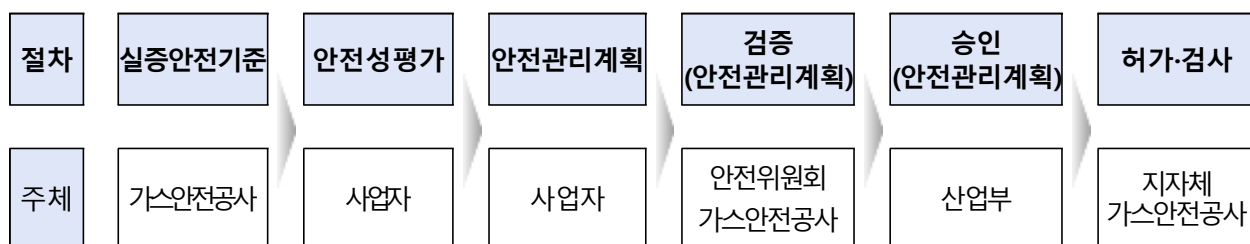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①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 ①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 ②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 ③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 ④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②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③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쓸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④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

①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②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③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1. 개요

-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린데·효성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1개/ 24개월 (9천대/개소)
②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③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④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⑤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실증조건 전체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 (실증운영 충전소) 21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 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② 충전설비 안전성

-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3 전문인력

-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4 주민수용성

-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5 국산화 투자계획

-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 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10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0년 6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네오팩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9-86-29663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우 13449)		
	대표자 백명훈		
확인내용	명칭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주요내용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홈 재활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효용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2025년 10월 17일 ~ 2027년 10월 1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34조		
	구역 전국		
	기간 2025년 10월 17일 ~ 2027년 10월 16일		
	규모 (환자) 소아마비 어린이, 뇌졸중 노인 등 총 2,000명 (병원) 어린이 재활병원·대학 재활병원, 의원급 등 재활의학과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총 300명 (기기) 스마트 재활기기 2000대 및 Application * 환자, 재활병원 의사·치료사 인원수, 재활기기 대수는 잠정 계획으로 일부 변경 가능성		
	조건 -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만 허용(진단·처방 불가),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의료기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의사·의료기사의 훈련 상담 내역 등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료법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0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풀무원녹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1-81-98406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대표자 김미경, 박광순, 김진홍		
확인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2025년 12월 13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II.공통표시기준 구역 - 기간 2025년 12월 13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5개 제품, 실증기간 동안 최대 30개 제품 제조·판매		
	조건 1.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 2. 구체적으로 신청한 5개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 외에 실증기간 동안 제조할 나머지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제조 3.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준수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4. (작업장 관리)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 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5. (위생관리)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7-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건우엔지니어링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36-88-0162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9번길 5(성주동)	
	대표자	강건우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을 내조 압력용기 소재로 적용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의 개발 및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ISO 탱크 컨테이너에 고망간강 소재 활용 불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7조, 제30조 제1항	
	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로 158	
	기간	2년	
	규모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3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추가 안전 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 및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
-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 * (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절(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 * (상세기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 추가 안전조치 내용 >

- (실증전) 고망간강 저장탱크, ISO 탱크 컨테이너, 용기 등에 대한 설계·제조*, 충전·운반** 및 저장·사용에 대한 국내·외 기준, 사례 등 조사
 - *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 ** ISO 탱크 컨테이너의 운송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실증중) 고망간강 재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격재료* 사용 및 사용 전·후 모재 및 용접재료에 대한 기계적 시험 등을 통한 구조·성능 안전성 확보
 - * KS표준, ASTM 등 기준에서 규정한 고망간강 재료

※ 신청한 실증 내용 중에 실제 LNG로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내용이 없으므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 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계획의 적정 여부 등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는 실제 액화천연가스(LNG)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나, 실증 내용에는 LNG 충전·운반, 저장·사용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실증 필요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이앤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6-87-007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1로 28, 102동 1401호(우동, 더블유비씨더팔레스)	
	대표자	송병근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을 내조 압력용기 소재로 적용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의 개발 및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ISO 탱크 컨테이너에 고망간강 소재 활용 불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7조, 제30조 제1항	
	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로 158	
	기간	2년	
	규모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3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추가 안전 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 및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
-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 * (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절(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 * (상세기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 추가 안전조치 내용 >

- (실증전) 고망간강 저장탱크, ISO 탱크 컨테이너, 용기 등에 대한 설계·제조*, 충전·운반** 및 저장·사용에 대한 국내·외 기준, 사례 등 조사
 - *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 ** ISO 탱크 컨테이너의 운송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실증중) 고망간강 재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격재료* 사용 및 사용 전·후 모재 및 용접재료에 대한 기계적 시험 등을 통한 구조·성능 안전성 확보
 - * KS표준, ASTM 등 기준에서 규정한 고망간강 재료

※ 신청한 실증 내용 중에 실제 LNG로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내용이 없으므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 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계획의 적정 여부 등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는 실제 액화천연가스(LNG)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나, 실증 내용에는 LNG 충전·운반, 저장·사용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실증 필요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소노인터내셔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3-81-08341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1층	
	대표자	이 광 수, 이 병 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p>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p> <p>-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p>	
	유효기간	2025년 8월 7일 ~ 2027년 8월 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양평군, 고양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강원도(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고성군), 전라남도(진도군, 여수시),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군), 경상북도 (경주시, 청송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기간	2025년 8월 7일 ~ 2027년 8월 6일	
	규모	소노호텔앤리조트 17개 지점 내 식음업장 59곳	
	조건	<p>○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p> <p>*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p> <p>○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p> <p>-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p> <p>*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p> <p>○ 사료관리법 준수</p>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0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자	MUNOZ BARCELO JOSE ANTONIO	
확인내용	명칭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및 성능 실증	
	주요내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후 자체 실험실 내에서 단열, 충전량 등 성능평가 실시 및 연구용 차량의 실제 주행을 통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성능평가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별표 10], [별표 10-2]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구역	경기도 화성시 현대연구소로 150,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20기,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상용 2기, 승용 1기	
	조건		
	확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함○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액상(液狀)으로 직접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는 해외 관련 규정, 적용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공사에 공유 필요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충전)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험실)** 액화수소의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결부 누출, Boil-off 가스 등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 실험실은 환기가 양호한 구조로 하고, Boil-off 가스는 방출관을 통해서만 방출 등

- **(용기고정)** 액화수소 충전 시 충전 호스와 용기의 안정적인 접속 및 용기 이탈 방지를 위해 **용기를 지지대 등에 단단히 고정**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제조등록에 따른 공장심사 또는 시설완성검사는 EU2021/535 인증기준을 따르고, 그 인증기준의 검사기관은 해당 국가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실증특례 허용 >

□ 실증사업의 차량용 액화수소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검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는 내압용기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외 안전기준인 EU2021/535를 준용하여 실증특례 실시 가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물산(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대표자	오세철	
확인내용	명칭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Alkaline) 수전해설비	
	주요내용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구조물 및 배관에 내면 코팅 미적용 탄소강을 사용해 수소생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271	
	구역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산 80번지 일원	
	기간	2년	
	규모	태양광 발전 연계 10MW급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1기	
	조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사업자는 실증설비 및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탄소강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인 코팅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 방안을 제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법령준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성 확보) 물, 수용액 등에 따른 부식에 대한 탄소강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① (설계검증) 탄소강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흐르는 유체의 성분, 온도, 압력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필요 * 상온의 KOH 수용액에 대한 부식의 안전성 및 고온(65℃ 이상)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 완화 열처리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용 유체, 온도, 압력 등에 따른 부식의 손실분을 반영한 부식여유도 검토 필요 *** 환경요인(유체·온도·압력 등에 따른 가속시험의 내식 성능 적정성 검증 방안(실증 前 제출) 및 시험 결과(실증 前 또는 中 제출) 검토 필요 ② (유지보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는 수전해설비 설치 시설에 대해 탄소강의 내부 부식 관리를 위한 부식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탄소강 부식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 및 보수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및 실증안전기준(안),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 검토/(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 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사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롯데쇼핑(주) 롯데몰동부산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5-37733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3층	
	대표자	KIM SAMUEL SANGHYUN(김상현), 신동빈, 정준호, 강성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구역	롯데몰 동부산점 내 식당	
	기간	2년	
	규모	롯데몰 동부산점 내 식당(10평 규모)	
	조건	○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5월 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알엠씨테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45-31-0084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713호(관양동)	
	대표자	김 석 중	
확인내용	명칭	맨홀 충격 방지구	
	주요내용	함몰되어 있는 맨홀 뚜껑 위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여 도로 위를 평탄하게 보완함으로써 도로 인프라 유지하는 제품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작업구 설치) 제3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항	
	구역	경기도 안양시 *추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확대	
	기간	2년	
	규모	맨홀 10대(C·D 등급)	
	조건	<p><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p> <p>○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위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할 경우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맨홀뚜껑' 단체표준을 제정·인증하고 있는 해당 단체표준인증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수렴 및 협의 필요</p> <p><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p> <p>○ 도로상 교통안전, 배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청에서 허가여부 판단</p> <p>○ 사업자를 '작업구 관리자'로 간주하여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부여</p> <p>○ 제품설치 후 사업자가 파손·변형 여부 매월 점검 및 도로 관리청에 보고 필요</p> <p><환경부 생활하수과></p> <p>○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라 '맨홀뚜껑충격방지구(이하 '충격방지구')' 설치로 인해 맨홀의 기능이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 「하수도설계기준」 '관로시설 설계기준' 7.2 맨홀부속물 기준*에 부합해야 함</p> <p>* 도로상에 설치되는 하수도맨홀뚜껑은 통행차량에 의한 맨홀 뚜껑이탈에 따른 인명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받침과 뚜껑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KS에서 규정한 중량 이상을 가져야 함 ⇒ '충격방지구'가 이탈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등)</p> <p>○ 맨홀 정비공사 시방서에 따른 맨홀 등급별 분류 중 C, D등급 상태의 맨홀에 '충격방지구'를 설치하는 것 실증특례를 계획하고 있음 ⇒ 충격방지구에 맨홀뚜껑이 가려져 상태 파악이 곤란하여 맨홀뚜껑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9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퍼피라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8-26-02042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24-44, 501,502호(호매실동, 센타프라자)	
	대표자	이은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24-44, 502호(호매실동, 센타프라자)	
	기간	2년	
	규모	퍼피라떼 1개소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		
	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9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도향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51-16-0228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1길 31, 102호(삼성동, 이화빌리지)		
	대표자 이지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1길 31, 102호(삼성동, 이화빌리지)		
	기간 2년		
	규모 도향 1개소		
	조건 <div>○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div> <div>○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div> <div>*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div> <div>※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div> <div>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div> <div>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div> <div>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div> <div>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div> <div>※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div> <div>○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div> <div>○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div>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8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9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가르베오(garbeo)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70-29-01715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174번길 54, 1층(을왕동)	
	대표자	서우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174번길 54, 1층	
	기간	2년	
	규모	가르베오 1개소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		
	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7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굿럭컴퍼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40-81-01436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문현동, BIFC)	
	대표자	윤 소 희	
확인내용	명칭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인천공항 및 국제공항(김해, 김포, 제주, 대구) 입국 교통약자의 짐찾기 대행 및 배송 서비스	
	유효기간	2024년 11월 24일 ~ 2026년 11월 23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관세법 제241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강화지침('18.7.30)	
	구역	(실증) 인천공항 제 1,2 여객터미널 및 국제공항(김해, 김포, 제주, 대구) (배송) 서울, 부산, 제주, 경기	
	기간	2024년 11월 24일 ~ 2026년 11월 23일	
	규모(대상)	- 장애인 전체(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 6세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자 - 13세 미만의 아동	
	조건	○ 수하물 통관 후 임시 보관장소는 원칙적으로 일반구역(land-side)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세구역 내 일시 장치가 불가피한 경우 인천세관과 협의하여 세관검사 및 승객 이동 동선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장소로 지정 ○ 굿럭 앱과 모바일 전자신고 앱 연동을 통한 세관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한해 시범운영 중으로 제1여객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심사대 추가 설치시(미정)까지 종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 ○ 굿럭 소속 직원의 보세구역(입국검사장) 출입시 물품 및 보세구역 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함 ○ 보세구역에서 물품·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2조,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업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수하물 통관 후 임시 보관장소는 원칙적으로 일반구역(land-side)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세구역 내 일시 장치가 불가피한 경우 인천세관*과 협의하여 세관 검사 및 승객 이동 동선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장소로 지정

* 제1여객터미널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과(032-722-4411)

* 제2여객터미널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2과(032-723-5111)

- 굿럭 앱(App)과 모바일 전자신고 앱 연동을 통한 세관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한해 시범운영 중으로 제1여객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심사대 추가 설치시(미정)까지 종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

* 모바일 전자신고 시범운영('22.5~7월), 본 운영('22.8월~)

- 굿럭 소속 직원의 보세구역(입국검사장) 출입시 물품 및 보세구역 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함

* 세관구역 출입 동의: 인천세관 공항물류감시1과(032-722-4749)

-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2조, 선박(항공기) 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영업등록: 인천세관 공항물류감시2과(032-723-5814)

※ 지방공항의 국제선 재개 추이에 따라 배송지역이 '부산, 제주'인 이용객의 경우 '인천-김해, 인천-제주'간 환승전용내항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증 준비단계시 해당 승객들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관세법 제146조제1항제2호)

⇒ '19년까지 '인천-김해, 인천-대구, 인천-제주'간 환승전용내항기가 운항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2월부터 운항 중단 → '22.9.14.부터 인천-김해간 환승전용내항기 운항 재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이에스텍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03-87-0255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8, 1호	
	대표자	전재홍	
확인내용	명칭	무수 액화 암모니아 직접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작 및 실증	
	주요내용	<p>○ 고농도(99.5%이상) 액체 상태의 무수 암모니아를 직접 전기분해 할 수 있는 수소추출기 제작 및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p> <p>☞ 기존 유사 기술대비 75~80% 정도 에너지효율이 높아 그로 인해 수소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실증 추진</p>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26조, 제3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 2조	
	구역	완주군 ①전라북도과학연구단지, ②테크노밸리 및 농공단지 일대, ③천안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내 실험실, ④동해시 그린수소 R&D 실증단지	
	기간	2년	
	규모	1~10Nm ³ /h급 수소추출기 4기	
	조건	<p><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p> <p>□ 사업자는 무수 액화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 실증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검사 등 「수소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p> <p>* 유사 기준인 수전해설비 제조 안전기준(KGS AH271)을 준용하되 독성·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기기의 작동 특성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 함</p> <p>**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44조(제품검사) 등</p> <p>□ 사업자는 스택의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설계적정성(강도)의 검증을 위한 구조응력해석(Analysis) 등의 방안*과 다음의 주요 사항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하는 조건으로 스택을 “압력용기”가 아닌 「수소법」에 따른 수소추출설비의 부품으로서 안전관리를 허용</p> <p>*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과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 셀의 파열시험 적용 등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검증 방법의 적정 여부는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p> <p>○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과압 발생 시 운전을 정지하는 장치 설치 필요</p> <p>○ (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음극과 양극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차압) 작용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p>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공통사항)>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무수	

액화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타법준수)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 또는 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해당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5월 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제너시스비비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111-1193153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제너시스빌딩 8층	
	대표자	김 지 훈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제너시스 비비큐 피터펫 논현점	
	기간	2년	
	규모	제너시스 비비큐 피터펫 논현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등○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24.4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적용○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코오롱글로벌(주) 호텔카푸치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65-85-03209
	주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코오롱)	
	대표자	김정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호텔카푸치노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호텔카푸치노), 39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반려동물 식기용 표시(안내)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반려동물 전용 음식 조리·판매 공간과 분리○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p>※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5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다운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69-32-01550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600, 660-1번지	
	대표자	이규찬 외 1명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인의 집에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1년차) 경상북도 안동시, (2년차)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지자체 협의회가 완료된 1개 지역 차량 2대 * 실증범위와 차량 확대는 1년차 실적 검토 후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p>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 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p> <p>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p> <p>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p> <p>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p> <p>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사·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설치제한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 체결시 설치제한 완화 가능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p> <p>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p>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2025년 12월 5일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8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12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LG전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7-86-1407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표자	권 봉 석, 배 두 용	
확인내용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상업용 CO2 세탁기	
	주요내용	액체 CO2(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유효기간	2024년 3월 21일 ~ 2026년 3월 20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조, 15조, 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조 및 별표4	
	구역	서울 가산동 LG전자 세탁시험연구동, 부산 사상구 런드리고 부산팩토리	
	기간	2024년 3월 21일 ~ 2026년 3월 20일	
	규모	연구소 내 CO2 세탁기 설치 및 시험운용, 런드리고 부산팩토리 내 필드 테스트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년(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상세조건 참고(붙임) ○ (제조시설 구축) 고압가스법상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세탁기 운영압력 모니터링 및 안전시스템, 환기구 등 구축 * 완화된 안전거리, 방호벽 설치 여부는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 (제조시설 운영) 추가안전사항 이행, 정기점검 실시, 교육받은 최소인원 출입 등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사업 안전성 검증 등 ○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 하기 안전조치를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수용
 - (제조시설 구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다음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
 - < 안전거리기준 적용 제외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사항 >
 - ◇ CO₂세탁기 적정 운전압력(43bar 이내) 모니터링 등 안전시스템 구축
 - ◇ CO₂세탁기의 설치장소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및 환기구* 설치
 - * 환기구 : 상시 환기 가능한 구조로 2방향 이상 설치
 - ◇ 가스누출 감지 시 경보설비와 연동되는 강제환기장치 설치
 - 다만, 완화된 안전거리(고압가스 제조시설과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 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CO₂ 세탁기 설치장소의 주변에 방호벽(고법상 방호벽 기초설치 기준은 적용제외) 설치에 대하여는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 *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제조시설 운영) CO₂ 세탁기 운전 시, 추가 안전조치사항 이행, 위해요소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
 - 또한, CO₂ 세탁기의 설치 장소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최소인원만 출입하고, 적정 운전압력 유지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위원회 구성, 이를 통해 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내용>
 - ◇ (실증 前) CO₂세탁기 설치기준 적용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세탁기 설치조건 설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8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12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LG전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7-86-1407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표자	조 주 완	
확인내용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상업용 CO2 세탁기	
	주요내용	액체 CO2(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유효기간	2024년 3월 21일 ~ 2026년 3월 20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조, 15조, 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조 및 별표4	
	구역	서울 가산동 LG전자 세탁시험연구동, 부산 사상구 런드리고 부산팩토리	
	기간	2024년 3월 21일 ~ 2026년 3월 20일	
	규모	연구소 내 CO2 세탁기 설치 및 시험운용, 런드리고 부산팩토리 내 필드 테스트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년(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상세조건 참고(붙임) ○ (제조시설 구축) 고압가스법상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세탁기 운영압력 모니터링 및 안전시스템, 환기구 등 구축 * 완화된 안전거리, 방호벽 설치 여부는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 (제조시설 운영) 추가안전사항 이행, 정기점검 실시, 교육받은 최소인원 출입 등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사업 안전성 검증 등 ○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 하기 안전조치를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수용
 - (제조시설 구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다음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
 - < 안전거리기준 적용 제외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사항 >
 - ◇ CO₂세탁기 적정 운전압력(43bar 이내) 모니터링 등 안전시스템 구축
 - ◇ CO₂세탁기의 설치장소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및 환기구* 설치
 - * 환기구 : 상시 환기 가능한 구조로 2방향 이상 설치
 - ◇ 가스누출 감지 시 경보설비와 연동되는 강제환기장치 설치
 - 다만, 완화된 안전거리(고압가스 제조시설과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 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CO₂ 세탁기 설치장소의 주변에 방호벽(고법상 방호벽 기초설치 기준은 적용제외) 설치에 대하여는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 *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제조시설 운영) CO₂ 세탁기 운전 시, 추가 안전조치사항 이행, 위해요소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
 - 또한, CO₂ 세탁기의 설치 장소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최소인원만 출입하고, 적정 운전압력 유지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위원회 구성, 이를 통해 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내용>
 - ◇ (실증 前) CO₂세탁기 설치기준 적용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세탁기 설치조건 설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7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엔솔브(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1-58894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83, 1층(,산단1로 6)		
	대표자 박 재 덕		
확인내용	명칭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비스		
	주요내용 V2G가 가능한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에서 건물 및 부산정관에너지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구역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 부산정관에너지 전력 공급 지역, 제주도 총 2곳		
	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양방향 충전기 최대 25대, 전기차 최대 50대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표원) 실증특례 기간 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국표원과 협의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이 필요 - (기후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임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하나, 신청 사업구역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에서만 전기차 전기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 - (기후부 전력시장과) V2B, V2H 거래 시 방전 전력이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력계통에 역송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한전과 협의하여 역송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엔솔브(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1-58894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83, 1층(,산단1로 6)	
	대표자	박재덕	
확인내용	명칭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수용가)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별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항, 제24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항	
	구역	신청기업의 구역전기사업 허가 구역	
	기간	2년	
	규모	아파트 3개 단지 2,105세대 / 상가주택 1,023세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전기의 기본공급약관」 보다 사업구역내 전기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제 금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요금제 설계 시, 전기요금 산정기준 및 전기요금 일반원칙은 “발전사업 세부기준 허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3-156호)” 등을 준용한 합리적인 요금제도* 설계가 필요* 실증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한전 요금보다 해당 구역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요금제 설계가 필요(부산정관에너지 약관 제4조 해당)○ (특례기간 이후 조건) 해당 실증사업 완료 후 본 사업 시행시에는 해당사업자의 전기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위해서는 인가 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1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기계연구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대표자	박 상 진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 생산·저장, 공급 관련 주요 핵심설비(부품) 국산화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제1항 및 제6항, 제22조의2(상세기준)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호	
	구역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40 (한국기계연구원 김해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일원)	
	기간	2년	
	규모	파일럿급 액화수소 플랜트 1개소, 액화수소 공급시스템 1기 구축 및 운영, 물성연구용 압력용기 1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액화수소 플랜트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법정검사 수검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해 구축 및 제작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고, 저장탱크 등 제품제조의 경우 안전성 평가 제외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플랜트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법정검사 수검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 (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외조에 과압안전장치 (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액화수소 공급시스템) 액화수소 기화 후 대기 방출되는 수소가스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준수

* 수소가스 회수 및 대기방출을 위한 절차서 마련, 플레어스택(벤트스택) 설치 등 수소가스의 대기방출 방법에 관한 안전 확보방안 수립 후 실증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한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결과를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공급시스템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제이유엔유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20-86-0282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대표자	김소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컴포타블 안국점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1층) 컴포타블 남산점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49, 별관 3층) 컴포타블 시청점(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5, 1층 104호) 컴포타블 서교점(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09-7, 지층) 컴포타블 광화문점(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46)	
	기간	2년	
	규모	카페 컴포타블 매장 총 5곳	
	조건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롯데쇼핑(주) 롯데몰동부산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5-37733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3층	
	대표자	KIM SAMUEL SANGHYUN(김상현), 신동빈, 정준호, 강성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구역	롯데몰 동부산점 내 식당 (테이스티그라운드 푸드코트 구역을 공유하는 음식점 12곳) ①스리카츠무 동부산점, ②수훈식당, ③연남토마 롯데몰 동부산점, ④고피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⑤동경규동(동부산점), ⑥케이솜차이(동부산), ⑦온기정, ⑧솔솔 롯데 아울렛 동부산점, ⑨새마을식당 동부산 롯데아울렛점, ⑩한양중식, ⑪할매손총무김밥, ⑫이가네 떡볶이	
	기간	2년	
	규모	롯데몰 동부산점 내 테이스티그라운드 푸드코트 구역(10평 규모)	
	조건	○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0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풀무원헬스케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1-81-98406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대표자 김미경, 박광순, 김진홍		
확인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2025년 12월 13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II.공통표시기준 구역 - 기간 2025년 12월 13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5개 제품, 실증기간 동안 최대 30개 제품 제조·판매		
	조건 1.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 2. 구체적으로 신청한 5개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 외에 실증기간 동안 제조할 나머지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제조 3.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준수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4. (작업장 관리)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 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5. (위생관리)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5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애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6-88-0130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66, 2층 203호 (괴정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5 현승빌딩 6층		
	대표자 안 상 현		
확인내용	명칭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자기 소유 차량 운전자 간 광고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플랫폼,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광고주와 광고매체 매칭 후 광고 집행·효과 분석 제공		
	유효기간 2026년 1월 17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구역 서울, 경기, 부산, 제주(자동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 등록지 기준)		
	기간 2026년 1월 17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1차 년도 동시 운행대수 3천대, 초과수요 발생 시 동시 운행대수 1만대		
	조건 (1)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준수 * (표시 위치) 차량 본체 양 측면, 후면(창문 제외) * (표시 면적) 각 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1/2 이내 (2) 전기 사용 및 발광방식 조명 사용 불가, 보행자·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 밀착 (3) 광고물에 실증특례 관련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부착하거나, 실증특례 안내 문구가 적힌 스티커 병행 부착 * 예시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수행 차량' 등의 문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8-81-02592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13층(관훈동, 동덕빌딩)	
	대표자	김 민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쏠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33곳 (별첨 참조)	
	기간	2년	
	규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33개	
	조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첨
에스케이플러그 하이버스(주) 충전소 구축 대상지 현황

구 분	충전소명	주소지
1	충청ES 사내부지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 419-1 일원
2	지제역 공영차고지	경기 평택 모곡동 545 일원
3	구미CNG충전소	경북 구미 선기동 436 일원
4	행복가곡 LPG 충전소	전남 순천 가곡동 186 일원
5	인천 신흥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5-33 일원
6	익산여객 차고지	전북 익산 목천동 67-35
7	에기평 R&D (대원고속관광 차고지)	충북 영동 영동읍 계산리 830-1 일원
8	SKHY 대흥주차장	경기 이천 대월면 대흥리 34-9, 34-5
9	부산CG 금정사옥	부산 금정구 노포동 236-6
10	부산CG 장림사옥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79-2, 1079-3
11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인천 서구 오류동 1620-1
12	장양리 버스공영차고지	강원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3-1 일원
13	수원 고색	경기 수원시 고색동 1196 일원
14	성남 사송공영차고지	경기 성남 수정구 사송동 279
15	부산 연제공용차고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7 일원
16	대구 유곡공영차고지	대구 달성 유가읍 유곡리 1161-3
17	인천 송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60
18	음성 성본산단공영차고지	충북 음성 금왕읍 유포리 365 일원
19	T2노선버스차고지	인천 중구 운서동 3234-2
20	구미 공단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5-14, 295-15, 295-16, 295-17 일원
21	전주 전미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동2가 77-1 일원

22	고양 대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일원
23	춘천 학곡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48 일원
24	용인 오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263-1
25	대구 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393-46 일원
26	대구 매곡	대구광역시 달성구 다사읍 매곡리 1112 일원
27	구리 사노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78-1, 산175-35 일원
28	천안 구룡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39 일원
29	부산 금곡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3-5 일원
30	화성 안녕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7-1 일원
31	전주 덕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0-3 일원
32	이천 율현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338-1, 2, 340번지 일원
33	대전 삼성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88 일원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 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액화수소 충전소 추가 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세운산업 주식회사, 신백승여행사(주)
(실증특례확인서 : 제108-3~5호, 23.3.30.)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해당 사업자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40개/ 24개월 (9천대/개소)
②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③ 국산화 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④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 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⑤ 주민수용성		미관 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등

□ 실증조건 주요내용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 (실증운영 충전소) 40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 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② 충전설비 안전성

-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 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 확보

③ 국산화 투자계획

-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④ 전문인력

-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⑤ 주민수용성

-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4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세운산업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7-81-7456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365번지	
	대표자	안 광 헌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쏠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6곳*	
		* [별첨] 참조	
	기간	2년	
	규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6개	
	조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 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첨**세운산업(주) 충전소 구축 대상지 현황**

구분	지역	주소지
1	인천	인천 서구 가좌동 178-131
2	인천	인천 중구 항동7가 79-1
3	인천	인천 남동구 운연동 212 ~ 213
4	인천	인천 부청구 청천동 67-2
5	인천	인천 중구 운서동 2863-14
6	경기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2-1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❶ 단열성능 유지, ❷ 적합한 재료 사용, ❸ 신축흡수조치, ❹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 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액화수소 충전소 추가 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세운산업 주식회사, 신백승여행사(주)
(실증특례확인서 : 제108-3~5호, 23.3.30.)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해당 사업자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40개/ 24개월 (9천대/개소)
②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③ 국산화 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④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 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⑤ 주민수용성		미관 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등

□ 실증조건 주요내용

①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 (실증운영 충전소) 40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 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② 충전설비 안전성

-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 확보

③ 국산화 투자계획

-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④ 전문인력

-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⑤ 주민수용성

-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
	대표자	배 정 철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7조 및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5로 41번길 4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가스연료기술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형(1기), 액화수소 단열재, 고망간강 액화수소밸브(3기) 액화수소 처리 및 계측 설비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특례 모두 수용

□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①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고망간강 및 용접재료 등에 대한 극저온 성능 관련 세부 물성자료 제출, ② 저장탱크 모형(Mock-up)에 대한 단열성능시험 관련 손실률(%/day)에 대한 적정 목표값 제시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사용) 특히,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을 위해 액화수소 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장소)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 중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치 방안* 강구

* 연결부 누출 또는 급격한 액화수소 방출에 따른 대응방안(예,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 밸브 등), 방출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 방지 방안(예, 필요시 방폭 설비 확보) 및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사용신고,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탱 크엔지니어링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51552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대표자	김 낙 종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7조 및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5로 41번길 4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가스연료기술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형(1기), 액화수소 단열재, 고망간강 액화수소밸브(3기), 액화수소 처리 및 계측 설비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특례 모두 수용

□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①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고망간강 및 용접재료 등에 대한 극저온 성능 관련 세부 물성자료 제출, ② 저장탱크 모형(Mock-up)에 대한 단열성능시험 관련 손실률(%/day)에 대한 적정 목표값 제시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사용) 특히,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을 위해 액화수소 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장소)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 중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치 방안* 강구

* 연결부 누출 또는 급격한 액화수소 방출에 따른 대응방안(예,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 밸브 등), 방출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 방지 방안(예, 필요시 방폭 설비 확보) 및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사용신고,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화오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1-57667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표자	권혁웅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7조 및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5로 41번길 4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가스연료기술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형(1기), 액화수소 단열재, 고망간강 액화수소밸브(3기), 액화수소 처리 및 계측 설비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특례 모두 수용

□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①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고망간강 및 용접재료 등에 대한 극저온 성능 관련 세부 물성자료 제출, ② 저장탱크 모형(Mock-up)에 대한 단열성능시험 관련 손실률(%/day)에 대한 적정 목표값 제시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사용) 특히,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을 위해 액화수소 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장소)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 중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치 방안* 강구

* 연결부 누출 또는 급격한 액화수소 방출에 따른 대응방안(예,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 밸브 등), 방출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 방지 방안(예, 필요시 방폭 설비 확보) 및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사용신고,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3-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피케이엘브엔지니어링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01498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0
	대표자	전 영 찬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7조 및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KGS AC111], [KGS AA317]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5로 41번길 4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가스연료기술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형(1기), 액화수소 단열재, 고망간강 액화수소밸브(3기) 액화수소 처리 및 계측 설비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특례 모두 수용

□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①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고망간강 및 용접재료 등에 대한 극저온 성능 관련 세부 물성자료 제출, ② 저장탱크 모형(Mock-up)에 대한 단열성능시험 관련 손실률(%/day)에 대한 적정 목표값 제시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사용) 특히,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을 위해 액화수소 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실증장소) 사업자는 저장탱크 단열성능시험 중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치 방안* 강구

* 연결부 누출 또는 급격한 액화수소 방출에 따른 대응방안(예,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 밸브 등), 방출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 방지 방안(예, 필요시 방폭 설비 확보) 및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사용신고,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비즈렌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7-81-55054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006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대표자	박종덕	
확인내용	명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기간	2년	
	규모	캠핑카 200대, 카라반 300대 총 500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 (상세조건 붙임 참조)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개발팀,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실증특례 부가 조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오펜핑)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 중개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주)비즈렌탈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주)비즈렌탈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주)비즈렌탈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캠핑레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희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주)비즈렌탈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주)비즈렌탈은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주)비즈렌탈은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매년 사업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제이유엔유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20-86-0282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대표자	최 지 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컴포타블 안국점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1층) 컴포타블 남산점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49, 별관 3층) 컴포타블 시청점(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5, 1층 104호) 컴포타블 서교점(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09-7, 지층) 컴포타블 광화문점(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46)	
	기간	2년	
	규모	카페 컴포타블 매장 총 5곳	
	조건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